

---

연금저축보험 계약이전수수료 면제  
특별약관

---



## 1. 연금저축보험 계약이전수수료 면제 특별약관

### 제1조 (특별약관의 적용대상)

- ① 이 특별약관(이하 ‘특약’ 이라 합니다)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적용합니다.
  - 1.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연금저축 계약으로, 2001년 1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가입한 경우
  - 2. 제1호에서 정의한 계약을 회사의 다른 연금계좌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
- ② 적용되는 대상상품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따릅니다.

### 제2조 (계약이전수수료)

제1조(특별약관의 적용대상)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지환급금,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계약에서 약정한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.

### 제3조 (준용규정)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을 따릅니다.